

「지하도상가 활성화 쇼핑백 제작」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인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의견적 안내(이하 입찰이라고 함)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지하도상가 활성화 쇼핑백 제작

나. 기초금액 : 금49,876,500원(금사천구백팔십칠만육천오백원) 부가세 포함

※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물품 및 규격

구 분	규 격(mm)	단 위	수 량	비 고
비닐쇼핑백	350*450	EA	190,000	○ 시방서 제품규격 확인 ○ 디자인 및 문구 사전 협의
종이쇼핑백	350*300*120	EA	11,300	
부직포쇼핑백	350*320*120	EA	16,500	
타포린쇼핑백	270*330*200	EA	16,000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인천 내 지하도상가 5곳(부평 3곳, 주안역, 석바위)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의문사항은 사업 담당자(상가주차사업단 인유정 ☎032-456-5568)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 2026. 08. 25.(화) 20:00 ~ 2026. 08. 31.(월)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6. 08. 31.(월) 11:00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별도통보 없음)

결과 확인후 당일 16: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기타인쇄물(551015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해당 물품 직접생산증명서 소지 업체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라.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약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 나. 본 입찰의 참가자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의 결정

-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 불가

11.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계약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 해당사항 없음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의 경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관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시설공단을 귀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 협약은행 : 신한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문의전화
- 1) 나라장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 용역내용 관련 : 상가주차사업단 인유정(032-456-5568)
 - 3) 공 고 문 관련 : 재무정보실 임진환(032-456-20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25.

인천시설공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자(근무기간)	현 담당업무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상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및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 이내 채용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협력(계약)기업 상생결제 이용안내문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결제와 동일하게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결제 제도입니다. 현금결제보다 빠른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구매기업의 여신 및 금리를 활용한 조기현금화가 가능합니다. 2차 이하 협력기업의 원활한 대금결제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차 협력기업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약정) 안내

- ① 은행 확인 : 공단은 현재 신한은행과 약정되어 있음
- ② (필수) 협력업체는 계약 후 위 은행 중에서 동일 상품 약정 가입
 - 은행별 협력기업 약정 방법 참조 (<https://www.kefci.com/>)
 - 사업자용 자유 입출금통장 보유, 기업인터넷 뱅킹 가입 필요
- ② (필수) 은행 상생결제 상품현황 및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은행	상품명	상생결제업무사이트	비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http://shinhan.kefci.com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http://hana.kefci.com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http://kb.kefci.com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http://nh.kefci.com	

- ③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이용방법 안내하기
 - 상생결제 상담콜센터 문의(☎ 1670-0833)
- ④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발행) 하기
 - 상생결제 이용자매뉴얼 참조(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제도 인센티브

- ① 세액공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4에 따라 협력기업이 결제(발행)한 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부여(발행금액의 0.1% ~ 0.2%)
- ② 금융수익 발생
 - 환출이자: 2차 협력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할인 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 장려금: 2차 협력기업이 채권을 만기보유 시 기간에 따른 이자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 ③ 여신한도 영향없음
 - 상생결제를 통해 발행·할인 시 협력기업의 여신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